■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신설 2020. 7.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연락처"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확인서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신청인이 지원신청 이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납부예외 또는 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이 고시 금액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 등 자격변동 사항 발생 시 보험료 지원이 취소됩니다.
2. 만약,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외부 공적자료를 통해 보험료 지원동안 신청인의 재산이 6억원 이상,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즉시 취소됩니다.
3. 보험료 지원 기간 중 타 지원제도(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의 지원을 받게 되면 보험료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타 지원제도 지원 시 보험료 지원은 타 지원제도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5. 지원신청 후 지원금액 반영된 연금보험료를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3개월 연속 체납한 때의 다음 달 초일에 보험료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1~5번까지의 사유로 보험료 지원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과소납으로 처리됨으로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은 상기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후 취소될 수 있는 사유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